

의안번호	2205354
의 퇴 인	이언주의원
회 답 일	2024.12.20.
추계번호	24D5001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구성)	정당은 중앙당과 시·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	의무규정
2	안 제30조제1항(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)	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·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며,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음	의무규정
3	안 제36조의3(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) 신설	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구성)	•지구당이 구성되더라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변화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2	안 제30조제1항(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)	•유급사무직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등이 발생하나 이는 정당의 보조금, 후원금 등 수입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
3	안 제36조의3(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(안 제36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, 공유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－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중앙당, 시·도당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사무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당의 수입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
 - － 정당의 수입은 당비, 보조금, 기탁금 등으로 구성되고 2023년 말 기준 수입 총액은 2,423억 7,500만원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)
- 다만,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구당 사무실의 평균 면적 및 임대 수입 발생 여부, 임대 수입이 감소하는 사무실 수 평균 임대료 수입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‘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’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당은 51개이고 시·도당은 총 381개 등록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